

도시관리계획(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74번지 서울신기초등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일
양 천 구 청 장

1. 변경결정 취지

「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신정동 1274번지에 위치한 서울신기초등학교에 대하여 별관동(다목적 강당)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범위(건폐율)를 변경하는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(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기정	학 교	초등학교	양천구 신정동 1274 번지	10,123.8	-	10,123.8	서고 제2000-105호 (2000.5.12)	서울신기 초등학교
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물 범위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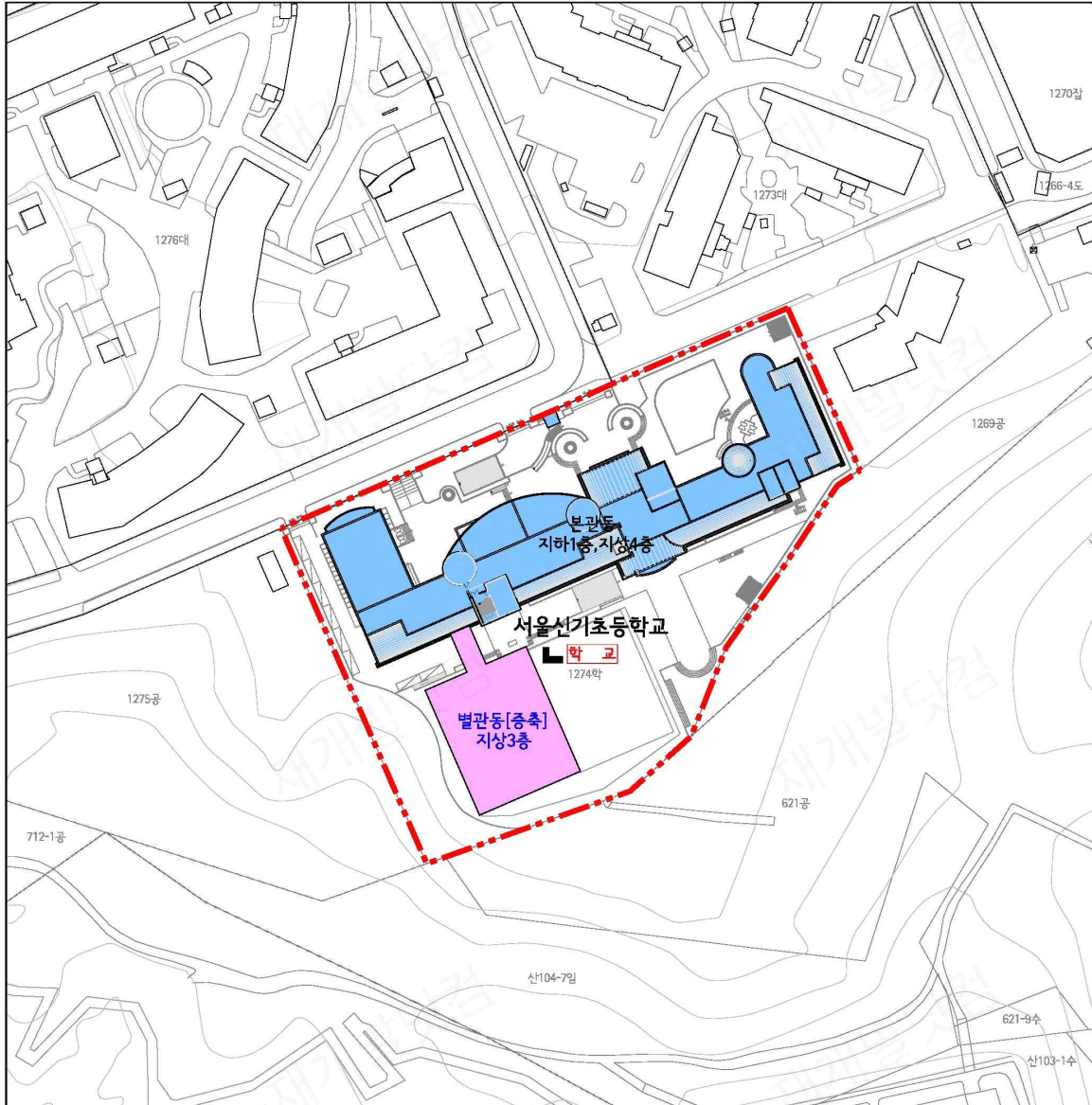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(층수)	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30이하	40이하	150이하	150이하	4층이하	4층이하	제1종일반주거지역

3. 관계도면 :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2620-3517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


도시관리계획 (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(변경)

Scale = 1:1,000



법례 (LEGEND)

-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선
- 기존건물
- 증축건물

도시관리계획(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-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학교	초등학교	양천구 신정동 1274번지	10,123.8	-	10,123.8	서고 제2000-105호 (2000.5.12)	서울신기 초등학교

건축범위 결정(변경)조서
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(층수)	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30이하	40이하	150이하	150이하	4층이하	4층이하	제1종일반주거지역